

《 연 말 정 산 안 내 》

· 개 요 :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
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소득세액을 확정, 연간 징수한 세액
과 비교하여 환급 및 추가 징수 납부하는 절차임.

· 준 비 서 류

- ① 주민등록등본 - 신규가입자, 공제대상 가족의 변동있는자.
- ② 전근무지 있는자 -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, 근로소득원천징수부
- ③ 가족관계부 - 주민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되지 않는 경우

· 인 적 공 제

항 목	공 제 금 액	공 제 대 상
기본공제	1,500,000(1인당)	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(20세이하, 60세이상) (장인, 장모도실제부양시 공제)
추가공제	2,000,000(1인당)	기본공제 중 장애인
	1,000,000(1인당)	경로 우대자 (70세이상자)
	500,000(1인당)	배우자있는 부녀자, 배우자 없는 부양가족있는 여성세대주 한부모공제(배우자 없는자, 20세이하 자녀)
다자녀추가공제자	1,000,000	기본 공제자녀 2인 (1인초과시 200만원씩추가)
자녀 양육비 공제	1,000,000(1인당)	6세이하 직계비속
출생 · 입양 공제	2,000,000	과세기간내 1인당

※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인적공제 대상 아님.

공제 대상여부는 주민등본 · 가족관계부 확인 후 판단

· 연금보험료 공제

근로자 본인 명의 가입한 연금 보험료 - 전액 공제

· 보험료 공제

① 국민건강 보험료, 고용보험료 - 전액공제

② 기타 보장성 보험료,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- 연 100만원 한도

· 의료비 공제

의료비 지출액 : 총 급여의 3%초과액 - 700만원 한도(본인, 65세이상자,
장애인 한도 없음) 장애인보장구, 의료기기 보청기

안경, 콘택트렌즈 (1인당 50만원이내)

· 교육비 공제

근로자 본인 - 전액공제(대학원 교육비 포함)

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, 직계비속, 형제자매 및 입양자 (연령제한 없음)

① 유치원, 영유아, 취학 전 아동 : 1인당 연300만원(체육시설추가)

② 초, 중, 고등 : 1인당 연300만원(급식비, 교과서대, 방과후학교수업포함)

③ 대학생 (대학원생 제외) : 1인당 연900만원

· 주택자금 공제

① 주택마련저축공제 - 300만원 한도(저축불입액의 40%)

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공제-300만원한도(원리금상환액의 40%)

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(이자상환액 100%) - 1,000만원
(상환기간15년이상)1,500만원(상환기간30년이상)(①+②+③합계액
500만원(1,500만원))

④ 주택월세액공제 - 배우자나 부양가족있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
택세대주(월세액의 50%). 2013. 8. 13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액도
공제대상

· 기부금 특별 공제

- ① 법정기부금 - 근로소득 금액 범위 내 100% 공제
- ② 특례기부금 - (근로소득 금액 - 법정 기부금) × 50%공제
- ③ 지정기부금 - (근로소득 금액 - 법정 기부금 - 특례 기부금) × 30% 공제 (종교단체기부금 10%)
- ④ 이월공제 : 법정 3년, 특례 2년, 공익 3년, 지정 5년

·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

- ① 개인연금저축 - 저축불입액의 40% (연72만원 한도 공제)
- ② 연금저축 - 저축불입액 전액 (연400만원 한도 공제)
- ③ 퇴직연금 불입액 - 연금저축 과 합해서 400만원 한도

·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 공제

- ①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학원비지로납부금액 + 현금영수증+기명식선불카드
- ② 초과금액 = {① - (총 급여액 × 25%)} × 15% (직불·선불카드30%)
- ※ 한도액 : 총 급여액 × 20%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

-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: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금액
- 고용유지 중소기업근로자 : 상시근로자 임금삭감액 50% 소득공제 (연 1,000만원한도)
-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: 목돈 안드는 전세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%(연300만원 한도)

·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

- 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
15~29세 이하자 2012~2013년 취업자 -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 100% 감면
- ② 세액공제
 - 근로소득세액공제 : 50만원한도
 - 일용근로자는 산출세액의 55%
 -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
 - 당해 연도 이자상환액의 30% 공제 - 농특세 부과됨

·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

- 정당(후원회, 선관위)에 기부한 정치자금
- 기부한 정치자금(연 10만원 $\frac{100}{110}$) - 10만원 초과는 기부금 공제

●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(www.yesone.go.kr)

① 소득공제 자료 조회 출력

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(주택임차차입금, 장기주택저당차입금), 개연연금저축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주택마련 저축,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부금, 장기극식형저축

② 공인 인증서 필요

③ 소득 공제 자료제공 동의

-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 조회시 사전 가족 동의
- 부양가족은 휴대폰, 신용카드, 팩스활용 홈페이지에서 동의 또는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신청서 작성, 신분증사본 첨부 가까운 세무서제출
- 20세미만 자녀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능

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
세무사 김기인 사무소

TEL. 755-8001 FAX. 755-8002